

2023년도 제1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7. 5.(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대행), 김성주, 김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대행

2. 전차(제2023-14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대행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사무처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대행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046건(안건번호 제2023-84309호~85657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84309호(순번 1번)는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는 게시물로,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3-84310호~84327호(순번 2번~19번)는 방송사업자 등의 복제권, 전송권,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기기를 판매하는 게시물들을 전송한 사안으로,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안건번호 제2023-84328호~84335호(순번 20번~27번)는 블로그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04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160회 저작권 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155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을 전부 공개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김민영 주임: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 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민영 주임: 금일 심의안건은 34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2,076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블로그에 만화의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게시한 사안임. 총 4개 게시물이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블로그에 일본 만화저작물의 불법 번역본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를 제공하고 있음. 직접링크를 통해 원천게시물로 이동하여 만화를 바로 감상할 수 있으며, 원천게시물은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로 확인됨.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만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불법복제물을 직접 전송 중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보아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수 있을지 문제됨.

우리 심의위원회는 게시자에게 불법행위 방조의 민·형사 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 경우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음. 따라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공중이 불법복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방조하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이 된다고 할 것임.

한편 링크게시물의 경우 불법복제물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되도록 원천게시물에 직접 시정권고하는 것이 우리 심의위원회의 기본 원칙이나, 원천게시물이 해외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천게시물과 별도로 링크게시물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하여 불법복제물로의 접근을 차단할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에 대하여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B 위원: 순번 1번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인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점,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 A,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게시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1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중국산 불법 스트리밍 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사안임. 총 18개 게시물임.

(순번 4번 및 19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본건 기기에 전용 앱(app)을 설치하면 실시간 TV 방송 서비스 및 VOD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영화, 방송 등의 영상저작물을 무단 이용할 수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김민영 주임: 본건 기기 판매행위는 권리자의 복제권, 전송권 및 동시중계방송권 침해에 대한 방조 행위임이 인정됨. 심의대상 게시물은 본건 기기 판매행위의 일환으로 작성된 것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본건 판매자는 본건 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심의대상 게시물을 작성하였는바, 본건 기기의 제작자 또는 구매자의 저작권 등 침해행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

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불법 스트리밍 기기 판매 행위가 저작권 등 침해의 방조행위에 해당하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권 침해 정보로서 시정권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2번~1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민영 주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0번~27번은 실명 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애니메이션 극장판, 출판물 등을 각 제공 중인 사안이며, 총 8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순번 20번 내지 27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B,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20번~27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김민영 주임: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28번~1349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2,046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방송, 영화, 출판, 만화, 게임, SW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B 위원: 순번 28번~1349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 만장일치로 순번 28번~1349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84309호(순번 1번)는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84310호~84327호(순번 2번~1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84328호~84335호(순번 20번~27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84336호~85657호(순번 28번~1349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대행이 제1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160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7. 12.

분과위원장 대행 김경숙

위원 김성주

위원 김 원